

05

IPSASB(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 회의참관 후기

임정혁·모원수 국가회계팀 연구원



1 개요

1. 일시 및 장소: '15.9.22.(화) ~ '15.9.25.(금) / 캐나다 토론토
2. 참석자: IPSASB 위원 및 참관인(GASB, XRB,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등)

<참고>

-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PSAS;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 국제적인 표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정된 회계기준임
- IPSAS를 제정하는 기구는 전 세계적인 공인회계사 연합체인 IFAC(국제회계사연맹) 산하 IPSASB(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임

2 주요 논의사항

이번 IPSASB Meeting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익 프로젝트(Revenue project)
2. 비교환비용 프로젝트(Non-Exchange Expenses project)
3. 재평가자산의 손상 공개초안(ED 57, Impairment of Revalued Assets)

3 논의결과 요약

이번 IPSASB Meeting의 논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익 프로젝트

IPSASB는 2015년 3월에 3개의 수익 관련 기준서*의 개선과 관련된 수익 프로젝트 개요(Revenue project brief)를 승인하였다. 이번 회의는 이 중에서 IPSAS 23 비교환수익(Revenue from Non-Exchange Transactions)과 관련된 다음의 4가지 이슈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 IPSAS 9 교환수익, IPSAS 11 건설계약, IPSAS 23 비교환수익

- 교환수익과 비교환수익의 구분
- IPSAS 23 비교환수익 기준서와 타 기준서와의 연관규정
- 수증받은 용역(services in-kind)의 수익 인식
- 자본보조(capital grants)의 수익 인식

(1) 교환수익과 비교환수익의 구분

현행 IPSAS 23은 특정 거래에 교환거래 요소와 비교환거래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를 판단한 다음 이를 구분하여 별개의 거래로 인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요소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거래를 비교환거래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방식은 교환요소와 비교환요소가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 경우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IPSASB는 수행의무(performance obligations) 접근법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수익 기준서를 2개로 분리하여 하나는 수행의무가 있는 수익거래에 따른 수익을 다루고, 다른 하나는 수행의무가 없는 나머지 수익거래에 따른 수익을 다루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IPSASB는 공공부분의 경우 수행의무가 분명하지 않은 거래가 존재하므로 수행의무 존재 여부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 역시 실체의 판단을 요구하게 되지만 이러한 방법이 교환수익과 비교환수익의 구분과 관련된 논의의 범위를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IPSAS 23 비교환수익 기준서와 타 기준서와의 연관규정

IPSASB는 호주회계기준위원회(AASB)의 공개초안 제260호, 남아공회계기준위원회의 GRAP 제23호에 따른 비교환수익 규정을 고려하여 향후 수익 프로젝트에서 다음의 이슈와 관련된 사항을 다루어야 할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① 비교환수익 거래에 따른 금융부채의 인식
- ② 비교환거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금융리스계약에서 발생한 수익의 인식
- ③ 자산 사용권리의 수익 인식

(3) 수증받은 용역(services in-kind)의 수익 인식

현행 IPSAS 23은 수증받은 용역(services in-kind)을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용역의 유형이나 특징을 수증받은 보고기간에 걸쳐 공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UN 등 일부 공공부분 실체의 경우 이러한 용역의 수증이 수익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IPSASB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수증받은 용역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할지 여부를 향후 재검토하기로 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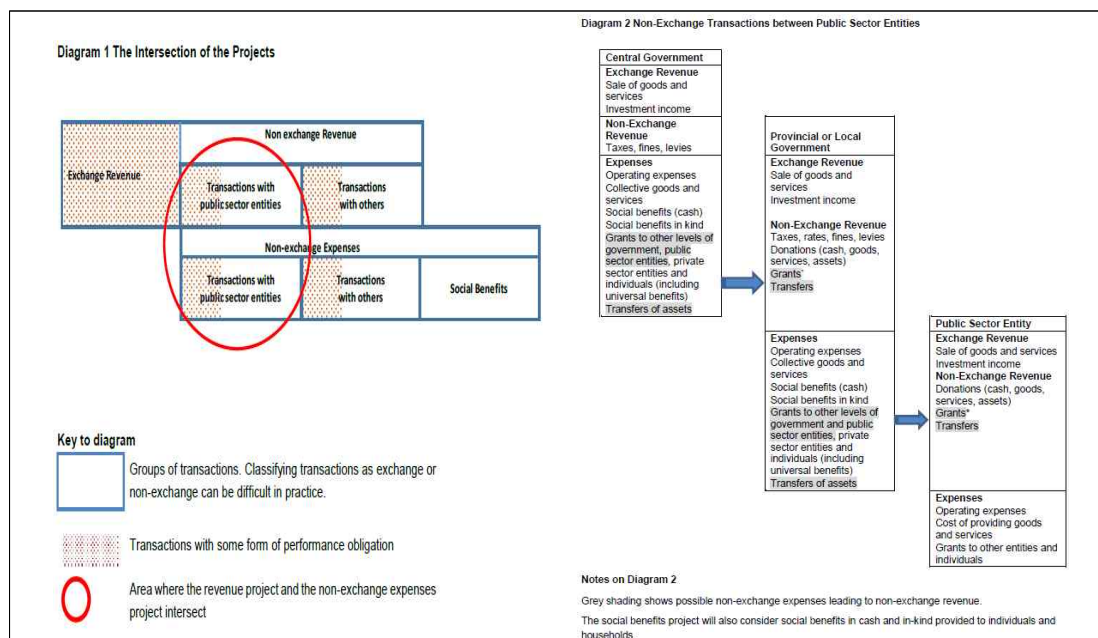
(4) 자본보조(capital grants)의 수익 인식

현행 IPSAS 23은 자본보조를 받는 경우 이를 수취 시점에서 일시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 등을 통해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무성과(financial performance)를 충실하게 표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IPSASB는 자본보조금의 반환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 비교환거래 요소에 대한 논의 결과에 따라 자본보조와 관련된 이슈를 수익 프로젝트에 계속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비교환비용 프로젝트

IPSASB는 2015년 6월 회의 결과, 공공부문 실체간의 비교환거래가 일어났을 때 일방은 비교환 수익을 인식하고 일방은 비교환비용을 인식하는 경우가 발생 가능하므로 회계처리의 대칭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비교환비용 프로젝트팀과 수익 프로젝트팀이 공동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비교환비용 프로젝트팀과 수익 프로젝트팀은 양 프로젝트의 공통범위로 타 수준 공공부문 실체에게 대한 보조금 및 자산이전 거래를 제시하는 한편, 대표적인 연관사례를 발굴하여 보고하였다.

공통범위 대표사례는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조금 지급 등 공공부문 실체 간의 비교환거래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비교환거래에 수행의무(performance obligations)와 부가요소(additional factors)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10개의 사례로 나누어 작성되었다. 위원회는 현재 IFRS 15, Revenue from Contracts with Customers를 참고하여 설정하고 있는 수행의무의 정의를 공공부문에 맞게 수정하기 위한 논의와 함께 부가요소의 종류를 수급조건(Eligibility Requirements), 시간제약(Timing Restriction), 예산배정(Appropriation)에서 더 추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다음 회의에서 다루기로 하였다.



3. 재평가자산의 손상 공개초안

IPSASB는 이번 회의를 통해 공개초안 57호 재평가자산의 손상(ED 57, Impairment of Revalued Assets)의 일부 문구를 수정한 후 승인하였다. 공개초안 57호는 재평가 금액으로 측정된 유형자산(PP&E)과 무형자산 역시 IPSAS 21과 IPSAS 26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도록 IPSAS 21 비현금창출자산의 손상과 IPSAS 26 현금창출자산의 손상을 개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기존의 IPSAS 21과 IPSAS 26에서는 재평가된 자산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손상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손상검사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전체 재평가 금액 중 얼마만큼이 손상과 관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았다. 이러한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정된 공개초안에서는 재평가된 자산도 매 보고기간 말에 손상검사를 수행하여 그 효과를 재무제표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수정된 IPSAS 21과 IPSAS 26에 따른 손상검사를 통해 재평가된 자산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것과 IPSAS 17에 따른 재평가를 통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것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해당 기준서에 관련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기로 하였다.

4 맺는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이번 IPSASB Meeting의 참관을 통해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업무협조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의 최근 주요 이슈를 검토함으로써 국가회계 관련 최근 국제적 동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향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IPSASB의 연구 프로젝트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국가회계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비교환거래)를 중심으로 심도 깊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